

# 농업생명과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

제정 2001년 9월 1일

개정 2005년 3월 15일

개정 2015년 1월 19일

개정 2019년 4월 19일

개정 2019년 6월 24일

## 제1조(기능)

편집위원회는 농업생명과학연구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.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및 윤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## 제2조(구성)

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편집위원장 1명
2. 편집간사 1명
3. 편집위원 약간명

## 제3조(위원의 임무, 임명, 임기)

1. 편집위원장(Editor in chief)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외부인사들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.
2. 편집위원회 간사는 원장이 따로 정하며,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부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. 간사는 편집위원장과 학술지 편집과 발간의 실무를 책임진다. 편집위원은 책임연구원 및 외부인사들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.
3.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4. 편집위원장은 농업생명과학연구의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.
5. 농업생명과학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원장은 국내외 석학들을 편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6.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, 심사규정, 윤리규정을 정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.
7. 투고 논문은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8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(개정 2019년 6월 24일)